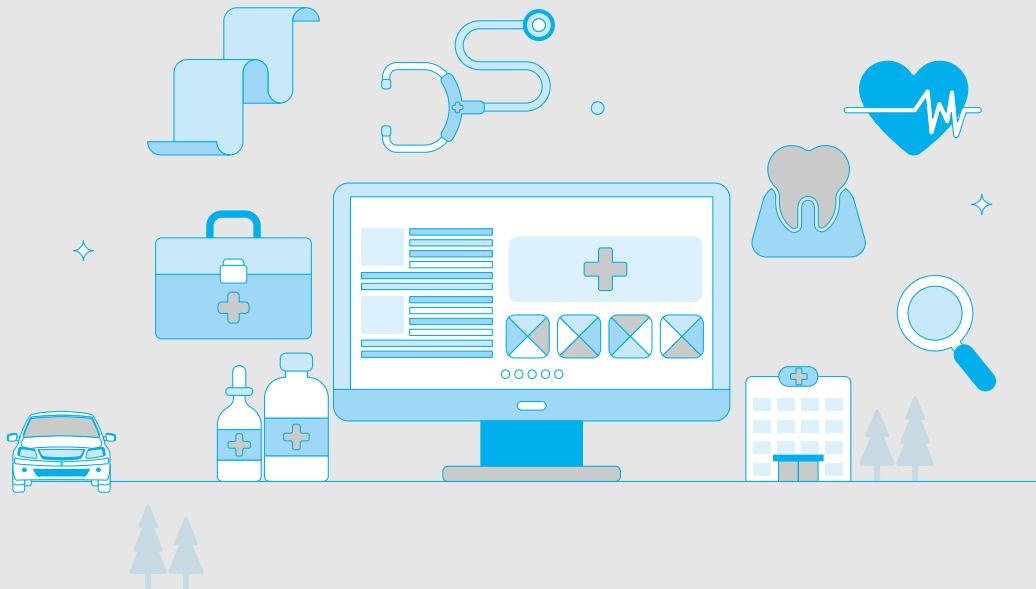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수록법령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는 대한민국의 주요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민국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법령이 제·개정되는 경우 국문 법령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박세훈(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부연구위원)

법령영역사업 개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여 「대한민국영문법령」 웹서비스 (elaw.klri.re.kr)를 지속적으로 국문 법률에 맞는 현행성을 유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최신영역서비스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7.04.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PERSONS)은 제12장 총 70조로 총칙(GENERAL PROVISIONS),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장기요양인정(APPROVAL FOR LONG-TERM CARE), 장기요양급여의 종류(TYPES OF LONG-TERM CARE BENEFITS), 장기요양급여의 제공(PROVISION OF LONG-TERM CARE BENEFITS), 장기요양기관(LONG-TERM CARE INSTITUTIONS),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EXPENSES, ETC. FOR IN-HOME SERVICE OR AGED CARE FACILITY BENEFITS), 장기요양위원회(LONG-TERM CARE COMMITTEE), 장기요양원지원센터(SUPPORT CENTERS FOR LONG-TERM CARE WORKERS), 관리운영기관(INSTITUTION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FILING OBJECTION OR APPLICATION FOR EXAMINATION),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 벌칙(PENALTY PROVIS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파법

전파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급변하는 전파환경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1961.12.30. 전파관리법(법률 제924호)제정되었으며, 2000.1.21. 전파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파법」(RADIO WAVES ACT)은 총 93조로 총칙(GENERAL PROVISIONS), 전파자원의 확보(SECURING SPECTRUM RESOURCES),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ALLOCATION AND ASSIGNMENT OF SPECTRUM RESOURCES), 전파자원의 이용(USE OF SPECTRUM RESOURCES), 전파자원의 보호(PRESERVATION OF SPECTRUM RESOURCES), 전파의 진흥(PROMOTION OF SPECTRUM RESOURCES), 무선종사자(OPERATORS),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 벌칙(PENALTY PROVIS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안에서 한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997.04.28.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법」(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은 총 29조로 목적(Purpose), 정의(Definitions), 법인격(Legal Personality), 설립(Establishment), 사무소의 설치 등(Establishment, etc. of Office), 임원(Executive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운영 자원(Financial Resources for Operation), 출연금(Contributions),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Approval of Project Plans and Budget Bills), 결산서의 제출(Submission of Settlement of Accounts), 벌칙(Penalty Provisions), 과태료(Administrative Fin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1970.01.01. 수출자유지역설치법(법률 제2180호)제정되었으며, 2000.01.1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03.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210호)로 전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51번의 제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은 제7장 총 70조로 총칙(GENERAL PROVISIONS),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DSIGNATION, ETC. OF FREE TRADE ZONES),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ADMINISTRATION OF AND MOVING INTO FREE TRADE ZONES),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SHIPMENT OF GOODS INTO OR OUT OF FREE TRADE ZONES AND CONTROL THEREOF, ETC.),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IMPOSITION, REDUCTION, EXEMPTION, ETC. OF CUSTOMS, ETC.),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 벌칙(PENALTY PROVIS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기영역법령

은행법

은행법(BANKING ACT/소관부처: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은 금융기관의 운용·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1950.05.05. 제정되어 1998.01.13. 전부개정을 거쳐 2016.07.30. 시행되는 법률의 영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역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된 내용(법률 제13448호) 및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된 내용(법률 제13613호)을 반영하고,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은행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및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법률 제14129호)까지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충실히 감안하여 국내법 개정을 이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소관부처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1.03.08. 제정하여 개정이후 2016.03.16. 시행 법률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된 연혁법률에 대해 영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역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진단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급대응 체계를 강화(법률 제13569호)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구조·구급에 있어서 대응 체계의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영문서비스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소관부처: National Police Agency)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 2005년 전부 개정되어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다. 2016.02.12.시행 법률까지 총 70회에 걸친 개정된 연혁법률에 대한 영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역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법률 제12917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과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법률 제13458호)하여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안녕과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영문서비스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법령 영문번역의 기본지침」의 법령번역 기준에 대하여 소개한다.

법령 번역의 세부 기준

1. 개관

법령은 일반적으로 총칙 규정, 실체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 부칙 규정으로 구성된다.

2. 총칙 규정(General Provisions)

가. 의의

법령의 총칙 규정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목적규정, 기본이념규정, 정의 규정, 적용 범위 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나. 목적(Purpose) 규정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를 밝혀 각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서, 법령의 목적은 'purpose'로 번역한다.

제○조(목적) 이 법은 △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에 ... 하는 것을/이바지하는 것을/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 by prescribing △ /matters relating to △.

다. 기본 이념(Basic Idea)에 관한 규정

법령의 기본이념 규정은 목적 규정과 유사하지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각종 기본법(Framework Act)에서 목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충설명하기 위하여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다. 기본 이념은 'basic idea'로 번역하며, 목적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제○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Article ○ (**Basic Idea**) **The basic idea of** social security is to realize the social integration and a happy welfare society by creating systems and conditions necessary for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realization to support the self-reliance of all citizens so that they may enjoy a happy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without various social risks.

라. 정의(Definitions) 규정

정의 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의 규정은 각종 기본법 및 해당 법령의 상·하위 법령, 해당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번역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번역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유지 하도록 한다.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Article 1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The term** “domestic corporation”**means** a corporation with its headquarters, main office, or actual business management place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마.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해당 법령이 적용되거나 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말하며, 각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1)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규정

제○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 (**Scope of Application**) This Act shall apply to every business or workpla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ing unit”) employing workers: Provided, Tha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types of employing un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view of specific industry characteristics, size, or other factors.

2) 적용제외(Exemption) 규정

제○조(적용 제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 (**Exemption**) Articles ○○ through ○○ shall not apply to occupational injuries, diseases, and death of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mining industry.

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제○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Article ○ (**Relationship to Other Acts**) This Act shall apply to assistance necessary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other Acts.**